##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527 제출연월일: 2024. 9. 2. 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

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, 과세 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 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,

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를 허용하고,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(안 제24조제2항)

1)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

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,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.

- 2)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.
- 나.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(안 제26조의2제3항)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 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.
- 다.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(안 제39조제3호 신설)

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.

라.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(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)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 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 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, 심사청구 또는 이 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 록 함.

#### 참고사항

- 가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
- 나.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5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법률 제 호

###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9항 본문 중 "2회"를 "3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납부고지서에 의한"을 "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"상속인은 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"를 "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"로, "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, 보험금을"을 "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 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: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
- 2.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(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)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= 
$$A \times \frac{B}{C}$$

A: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

B: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

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

C: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

제26조의2제3항 중 "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3항,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 1항제1호,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 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"을 "다음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이월결손금등"이라 한다)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"으로, "이월결손금을 공제한"을 "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3항,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, 제76 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
-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제26조의2제6항제6호 중 "제1항에 따른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"를 "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"으로, "과점주주가"를 "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

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(이하 "과점조합원"이라 한다). 다만,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.

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90일"을 "3개월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"을 각각 "결손금액,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"으로 한다.

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. 제51조제8항 전단 중 "10만원"을 "20만원"으로, "제2항제1호"를 "같은 항 제1호"로 한다.

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"15일"을 "20일[제65조제1항제3호 단서(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]"로한다.

제81조의15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81조의15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감사원법」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.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 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제6 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 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

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-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1항,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2항 본문 및 「소득세법」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7조(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8조(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9조(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10조(전자송달 신청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제 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서류 송달의 방법) ① ~	제10조(서류 송달의 방법) ① ~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⑨ 납세자가 <u>2회</u> 연속하여 전자	(9) <u>3</u> ফ্রা
송달(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	
경우에 한정한다)된 서류를 열	
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	
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	
본다. 다만, 납세자가 전자송달	
된 <u>납부고지서에 의한</u> 세액을	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
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	<u> 따른</u>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.</u>
⑩・⑪(생 략)	⑩·⑪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	제24조(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
승계) ① (생 략)	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	②
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	
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	
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	
고 <u>상속인은 「민법」 제1019조</u>	<u>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</u>
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	<u>인이</u>
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	
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	
<u>하여</u> 보험금(「상속세 및 증여	

세법」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 인으로 보고, 보험금을 상속받 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</u> 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--

----.

- 1. 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: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
- 2.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(「민법」 제 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)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상속받은 재산으 = A × B 로 보는 보험금 C

A: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

B: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③ ~ ⑥ (생 략)

제26조의2(국세의 부과제척기간)

- ① · ② (생 략)
-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기술 파세기간에 기술 두세 법」 제45조제3항,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,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업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C: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

호의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이 월결손금등"이라 한다)을 공제 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-

\_\_\_\_\_

\_\_\_\_\_

<u>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</u> -----

----**.** 

- 1.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3항,
 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
  호,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
  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
  이월결손금
-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

- ④·⑤ (생 략)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(이하 이 호에서 "조세정보"라 한다)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: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
- 7. (생략)
- ⑦ ~ ⑨ (생 략)
- 제39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 제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

제1앙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
<u>제 액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
<b>6</b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 <u>제1항</u>
및 제2항에 따른
7. (현행과 같음)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39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
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 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 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 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 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 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<u>제2호에</u>
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
른 과점조합원
과점주주 또는 과점조
합원이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
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
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
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
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

제45조의2(경정 등의 청구) ① 과 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 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 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 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 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자들(이하 "과점조합 원"이라 한다). 다만,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 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 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 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 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.

세45소의2(경정 등의 정구) ① -

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 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 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 손금액 또는 환급세액(각 세 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 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
- ② ~ ⑦ (생 략)

개정법률

- 제47조의5(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제47조의5(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) ① ~ ⑤ (생 략)
  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2호

<u>3개월</u>
2 <u>결</u>
<u>선금액,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</u> <u>세액</u>
<u>결손금액, 세액</u> 공제액 또는 환급세액
<u>결손금액,</u>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
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

> 가산세) ① ~ ⑤ (생 략) <삭 제>

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원 천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 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51조(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 전 급) ① ~ ⑦ (생 략)

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 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 고,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 로 본다.

### ⑨ ~ ⑪ (생 략)

제81조의7(세무조사의 통지와 연 지기신청 등)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(납세자가 제82조에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

세51조(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
급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8
<u>20만원</u>
같은 항 제1
<u>호</u>
⑨ ~ ⑪ (현행과 같음)
세81조의7(세무조사의 통지와 연
기신청 등) ①

납세관리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(이하 이 조에서 "사전통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② ~ ⑥ (생 략)

- 제81조의15(과세전적부심사) ① 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(이하이 조에서 "과세예고통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만원 이상인 경우. <u>다만, 「감</u> 사원법」 제33조에 따른 시정 <u>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</u>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

<u>20일[제65조제1항제3호 단</u>
서(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
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
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]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1조의15(과세전적부심사) ①
·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다만, 다음</u>
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⑨ (생 략)

- 가. 「감사원법」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
- 나.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인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#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의 결과

O 수입 : △0.38억원

(단위: 억원)

2 -						위: 덕원)		
구 분	7. 7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			해	당	없	유		
지출								
	소 계(A)							
	○ 사 망 보 험 금 에							
	대한 납세의무		<b>支</b>	l	7	<b>=</b> 1		
	승계 범위 합리화		추	정	곤	란		
	(국기법 §24②)							
	ㅇ이월세액공제에							
	대한 부과제척		추	정 콘	ユ	란		
	기간 특례 신설		7		L			
	(국기법§26의2③)							
	○제2차 납세의무를							
수입	부담하는 출자자		추	정 진	곤	란		
	범위 확대				٢			
	(국기법§39)							
	○세액공제액에 대한							
	경정청구 허용		추	정	곤	란		
	(국기법§45의2) ○미수령 환급금							
		^ O O576	^ O O7/	^ O 07/	^ O O7/	^ O O7/	^ O 20	^ O OT/
	충당기준 상향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38	△0.076
	(국기법§51)							
	소 계(B)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38	△0.076
총 비용(A-B)	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076	△0.38	△0.076

# 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・항(조제목)	주요내용
	제24조제2항	
	(상속으로	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
1	인한	
	납세의무의	증가하게 됨
	승계)	
	제26조의2제3항	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
2		는 경우 해당 이월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공
2	(국세의	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
	부과제척기간)	됨
	제39조	
3	(출자자의	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에 따
3	제2차	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
	납세의무)	
	제45조의2	이월세액공제 금액의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
4	(경정 등의	경정청구를 허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
	청구)	6681를 이중함에 떠나 세계가 심포이게 함
	제51조	
5	(국세환급금의	미수령 환급금의 자동 충당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
	충당과 환급)	

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	제24조제2항		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포함되는 상속인의
1	(상속으로 인한	×	
	납세의무의 승계)		수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	제26조의2제3항		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
2	(국세의	×	이월하여 공제하는 규모 등을 사전에 합
	부과제척기간)		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	제39조		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영농 · 영어
3	(출자자의 제2차	×	조합법인의 조합원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
	납세의무)		으로 추정하기 곤란
4	제45조의2	×	개정규정 적용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
4	(경정 등의 청구)	^	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
5	제51조		
	(국세환급금의 충당과	0	
	환급)		

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O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개정 법률안이 '24.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(§24②)
- ㅇ 세수증 : 추정곤란
  - 확대된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포함되는 상속인의 수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
- ②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(§26의2③)
- ㅇ 세수증 : 추정곤란
  -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- ③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(국기법§39)
- ㅇ 세수증: 추정곤란
  - 확대된 2차 납세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영농·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수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
- ④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(국기법§45의2)
- ㅇ 세수감 : 추정곤란
  - 이월세액공제 금액의 과소신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허용함에 따른 경정청구 인용 금액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- ⑤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(국기법§51)
- ㅇ 세수감 : △0.076억원
  - '23년 연도별 10만원 이하 구간 기준: 환급발생액 83.89억원, 충당금액 3.00억원 ⇒ 충당비율 3.574%
  - '23년 연도별 20만원 이하 이하 구간 기준 환급발생액 164.23억원 ⇒ 충당비율(3.574%) 적용 시 예상충당액 5.87억원
  - 예상충당액 증가액: 5.87억원 3.00억원 = 2.87억원
  - '23년 기준 미처리 미수령환급금 중 국고 귀속 환급금 비중: 2.65%
  - 연간 세수효과 : 2.87억원 × 2.65% = 0.076억원

#### IV. 부대의견

○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# Ⅵ. 작성자

### 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팀장	실장・국장
임동호	전동표	김완수	박금철

#### 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동호	044-215-4154	greg0305@korea.kr

<sup>\*</sup>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###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#### 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#### 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#### 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○ '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·감면 효율화,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

### IV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#### 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혐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	_	해당사항 없음
_	_	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#### VI. 작성자

#### 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팀장	실장・국장
임동호	전동표	김완수	박금철

#### 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동호	044-215-4154	greg0305@korea.kr

<sup>\*</sup>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